

위례~신사간 경전철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내용서



2015. 11.

강 남 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3. 과업의 개요 .....	1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5

### 제 2 장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1. 일반사항 .....	11
2. 조사내용 .....	11
3. 관련계획 검토 및 설계기준 등 .....	14
4. 주차 현황분석 및 장래 주차여건 전망 .....	15

### 제 3 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 개발기본구상 .....	16
2. 신사·청담·논현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 제시 .....	16
3. 사업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 .....	16
4. 지하주차장(입체화) 계획 .....	16
5. 환경성 검토 (필요시) .....	17
6.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	18
7. 타당성 검토 효과분석 .....	19

### 제 4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20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	20

### 제 5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	23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	23

# 제1장 총 칙

## 1. 과업의 명칭

- (1) 본 과업의 명칭은 『위례~신사간 경전철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 한다.
- (2) 본 과업에서는 강남구청(교통정책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 상대자”라 한다.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신사, 논현, 청담지역은 다세대 등 주택비율이 높아 주차난이 상시 부족한 지역으로 특히, 로데오길, 가로수길 등 이용인구 및 차량이 많이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지역임
- (2) 특히, 도산대로 구간은 건축물 후퇴구간을 이용한 보도위 주차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발렛주차 등 불법영업행위도 매우 심각한 지역임
- (3) 그러나, 해당 지역 주차장 확보 비용은 1대당 약 최소 3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1대 = 10평)되어, 공공부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바,
- (4) 금번 기본계획이 확정된 위례신사간 경전철 노선 중 도산대로 구간에 "천호역"이나 "잠실역"처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전철 공사시 병행하여 시행 함으로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 3. 과업의 개요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2) 과업의 범위

### ① 공간적 범위

도로명	구 간	연 장	비 고
소 계		약 3,260m	
도산대로	신사역~울지병원사거리	약 860m	
"	울지병원사거리~학동사거리	약 1,100m	
도산대로(영동대로 일부)	학동사거리~영동대교남단삼거리	약 1,300m	



< 구간 위치도 >

### ② 내용적 범위

- 위례~신사간 경전철 기본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 주변도로 현황조사 및 분석
- 주변지역 주차현황 및 장래 주차수요 예측
- 물리적 타당성 및 시공방법
- 기본계획 및 개략 사업비 산정
- 경제성 검토 : B/C, IRR, NPV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주차장 및 기존 철도시설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검토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실현가능하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제시

### ③ 과업의 주요 내용

- 가. 위례~신사간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상위계획 검토
- 위례신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노선 및 역사
  - 철도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개발방향
  - 철도 종류 및 차량 등 세부세항에 대한 사항
  - 사업추진 방법 및 개발 방향 등

#### 나. 현황조사 및 분석

- 도로 및 주변시설 현황 조사
- 주요 교통시설 및 주차시설 조사
  - 주변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버스운행, 횡단보도, 신호체계, U-Turn, P-Turn 등 조사
  -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위치, 규모 운영방안 등
  - 건축물부설주차장(옥내, 옥외, 기계식, 자주식)의 규모, 운영방안
  - 도로별 불법주차 현황 및 특성파악

#### 다. 장래 주차수요 예측

- 검토대상지 주변에 대한 장래 사회경제 지표 예측
- 자동차 보유 대수 및 건물연산면적 추정
- 주차수요예측 모형(원단위법, P요소법 등) 이용한 장래 수요 예측

#### 라. 법적 검토

- 도로지하공간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관련 법규
- 관련법에 따른 지하주차장건설 적합성 여부
- 사업시행 필요한 각종 행정처리 절차 및 예상 공정

#### 마. 경제성 검토

- 자체사업 또는 민자유치(BTO, BTL 등)의 개별방법별 적정성 검토
- 동 환승주차장 설치관련 최적 사업추진방법 제시

#### 바. 시공여건 검토 및 개략 설계, 우선대상지 결정 및 대안 연구

- 도로지하공간 개발 물리적 여건 검토(기존 문헌 자료 활용 등)
- 적용 공법 및 공사시행방법
  - 시공시 도로교통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최소방안 검토
- 적정 주차규모(층별, 대수별 등) 산정
- 주차장별 건설 및 운영방안 제시
  - 대상지별 개발우선순위 선정
  - 개별 주차장 개발시 우선 해결과제 및 검토사항 제시
-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 공사의 편의 및 교통영향 최소 측면 검토

##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1) 과업수행방법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항 발생시 등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검토, 반영토록 한다.
- ③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평가시 평가와 동등(자격, 경력, 유사실적)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착수계
-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③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④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투입계획
- ⑤ 과업수행 조직표
- ⑥ 내역서
- ⑦ 예정공정표
- ⑧ 보안 대책 및 보안 각서
- ⑨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업무협의를 및 공정보고

①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성과품 작성시
- 자문회의시
- 월간공정 보고시
- 준공시

②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의 매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를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최종보고 :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⑤ 공정 지연시 만회대책 수립

공정 지연시에는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공정 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①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착수신고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한다.

②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구체적인 협의사항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지정한다)

6) 자문, 주민설명회 등

(1)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한다.

※ 자문위원의 구성 또는 위촉은 발주기관과 협의토록 한다.

(2) 본 과업기간 중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필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획에 반영한다.

7)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용역착수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발주기관에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및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지 등은 소각 또는 분쇄 처리 등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2)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 (3)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 범위, 내용 등의 주요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 ① 서울시 및 우리구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추가과업 수행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2) 과업기간 변경조건

-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 발생시
- ②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시
- ③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④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행 능력평가기시 평가와 동등(자격, 경력, 유사실적) 이상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용어의 해석

-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1. 일반사항

(1) 조사 일반

조사업무 착수시 국내외 자료조사계획, 교통 및 지장물 등 현황조사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 항목

- ①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② 현지 조사 및 답사
- ③ 교통시설 및 주변 주차상태 조사(원단위 및 불법주차 상태 조사 포함)
- ④ 환경영향 조사
- ⑤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 ⑥ 토지이용조사(각종 계획 등) 및 용지조사
- ⑦ 일반 구조물조사 및 지반조사
- ⑧ 국내외 사례조사
- ⑨ 기타조사

(3) 주민의견 수렴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문조사,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팸플릿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

(4)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와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

### 2. 조사내용

(1)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 현황, 도로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

- 조사업무 착수시 국내외 자료조사 계획, 교통 및 지장물 등 현황조사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② 현지답사 및 현황조사

- 도시개발상태, 관광특구, 지상·지하 주요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 인접 건축물 현황, 주변 차량진출입 현황, 도로현황, 교통현황, 주차시설 등 현황조사

(2) 교통량 및 교통시설물 조사

① 조사사항

- 교통량 조사는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의 교통량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범위 내 대상으로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분석
- 시설, 주차장, 교통신호등, 교통관리시스템 기타 관련시설 자료는 서울시 내부자료를 수집하고 직접조사를 통하여 이를 보완

② 용량분석

- 사업범위 내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는 조사된 교통량과 교통신호 운영현황, 주변 교통시설 운영현황을 토대로 도로용량편람 등 공인된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 대형버스 등 관련 대형차에 대한 통행/주차 상태를 조사 분석한 후 시설용량을 결정

(3) 지장물 조사(하수/배수 등 지하매설물, 전신주 등 지상시설물)

① 조사방법

- 지하매설물(공급차폐시설 현황)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장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GAS, CABLE, 전력구 등)을 조사

② 확인 및 도면작성

- 서울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 서울시 지하매설물관리시스템 등을 참고하되, 현장조사 결과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활용하여 지장물도를 작성·제출
- 필요한 경우 조사방법 등 조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

(4) 환경영향 조사(필요시)

- 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검토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②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곳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과 공사 시공 시 차음방안, 분진/악취 방지시설 등 기타 재해방지방안을 검토 제시

(5) 구조물 조사

- ① 과업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 여부와 위치를 조사
- ②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

(6) 지반조사

- ① 지하시설물 계획노선상의 지반상태에 대해 기존의 시추 및 설계, 공사자료와 문헌자료 특히 서울시지반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되 특별히 시추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 실시
- ② 지반조사 항목 및 시험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에 의하여 수행

(7) 국내외 선진 사례조사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적절히 반영

(8) 기타조사

- ① 사전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②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
- ③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
- ④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 3. 관련계획 검토 및 설계기준 등

#### (1) 관련계획 검토

- ① 본 과업 수행시 관련기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주변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 ② 「위례신사선 지하경전철」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함
- ③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사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④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

#### (2) 시설물 설계기준 및 기타

- ① 각종 시설물의 설계 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본 과업에 적합한 시설물 설계기준을 정립하여 적용
- ② 지하구조물 등 중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며, 세부지침은 구조물설계기준에 따름
- ③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자문회의,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확정
- ④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

### 4. 주차 현황분석 및 장래 주차여건 전망

#### (1) 주차현황분석

- ① 계획 구역내 일방통행 방식 등 합리적인 교통운영계획에 필요한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 ②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유입되는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지역내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 ③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유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 (2) 장래 교통 및 주차여건 전망

- ①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 ②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유입되는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 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 분석 한다.
- ③ 장래 주차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원단위법 및 P요소법 등을 활용하여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한다
- ④ 강남역 활성화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승용차 통행/주차 실태 조사분석 및 인접도로 불법주차 형태를 분석한 후 시설용량을 결정한다.

#### (3) 기타사항

- ①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등)를 예측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서울시내 전 구간을 공간적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 대상으로 분석대상으로 한다.
- ②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 단기 개선방안
- ③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해당지역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 제3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1. 개발기본구상

#### (1) 개발방향 설정

- ① 「위례신사선 지하경전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설정
- ② 신사·논현·청담동 일대 승용차 이용차량 및 주민주차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여
- ③ 가로수길, 로데오길 등 주변 주요시설과 상호보완 관계 및 주요 연결 축으로서의 역할 부여

#### (2) 사업최적(안) 마련

- ① 위례신사 지하경전철이 입지하는 지리적·기능적 특성 등을 반영한 입체적 공간 활용방안 제시
- ② 향후 중장기 도산대로 주변 활성화를 고려한 주차시설 도입 가능여부 검토 및 계획
- ③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유희공간 활용 방안 등

### 2. 신사·논현·청담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 제시

- (1) 로데오길, 가로수길 일대 젊음과 상업 등 기능에 부합되는 주차 현황 파악
- (2) 상권특화 거리 등 문화공간과의 연계된 활성화 방안 제시

### 3. 사업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

- (1) 사업규모, 사업비 산정, 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 사업방식 별 장단점 및 수익성, 리스크 등을 종합분석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구체적 사업방식 수립·제시
- (3) 사업추진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년차별 투자계획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시

### 4. 입체화(지하주차장) 계획

#### (1) 지하주차장의 계획시 검토사항

- ① 계획구상시 방향설정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야 한다.
  - 기능적 측면 : 주차장 , 보행 등 대상지활용목적 도출

- 정책적 측면: 주변 및 각종 상위계획 측면에서 활용타당성 도출
- 사회/문화적 측면 : 강남구민 이용성, 대상지 활용구상 도출
- 기술적 측면: 실현가능한 방안 도출

- ② 계획구상/공간활성화 전략은 지역 상생, 공공성, 복지, 친환경 등을 고려
- ③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계획
  -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조사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방법을 제시
  -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
  - 공법의 선정은 지반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

#### (2) 지하시설물 유출입 계획

- 지하시설물 출입구 계획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

#### (3) 지하 주차면 계획

- ① 주차장 노면은 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어야 한다.
- ② 주차선 배치계획을 사전에 검토 반영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
- ③ 대형차 주차장만 아니라 일정부분(5%이하) 소형차 주차공간도 확보방안을 검토
- ④ 대형차 주차장이므로 주차바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대형차 주차장은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적절한 용량을 확보

#### (4) 사토장 선정

- 도심 지하공간을 개발함에 따라 사토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며,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선정

### 5. 환경성 검토 (필요시)

- (1) 사업시행에 의해 대기, 수질, 토질, 문화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
- (2) 환경영향 검토
  -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방음 및 방진계획과 공사중 수질오염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

## 6.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 (1) 시설물 입지 검토

#### ① 시설물 입지 검토

- 주변시설과 연계한 지하주차장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최적위치를 도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특성 분석과 사업지 관련계획을 통하여 구조물 최적의 시설 입지 및 유·출입구를 선정

#### ② 구조물의 평면/종단선형

- 구조물 평면/종단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행의 쾌적성/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

#### ③ 경제성, 안전성 및 효율성

- 구조물의 평면선형과 종단경사는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구조물계획, 지형지물 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
- 시설물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시설물의 진출입에 대하여 소통과 안전성을 확보

### (2) 구조물 계획

#### ①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을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

#### ②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

#### ③ 구조물 형식 및 공법 계획시 기존교통 소통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형식을 강구

### (3)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과 문화재피해의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제시

## 7. 타당성 검토 및 효과분석

### (1) 입지타당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적, 경제적 등)

### (2) 경제, 교통 등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경제, 교통 등)

## 제5장 성과품 작성

### 1. 일반사항

#### (1) 성과품 작성기준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목록,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의 내용 등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토록 한다.

#### (2) 최종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결과물은 강남구청장에게 귀속된다.
-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 도면, 보고서, 유인물 등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후이라도 성과품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하여 제출한다.

###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 (1) 종합보고서 작성

- ① 표 지
- ②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 ③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④ 목 차
- ⑤ 위치도
- ⑥ 과업의 개요
- ⑦ 현황 및 여건분석 (현황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

- ⑧ 국내외 사례 검토
- ⑨ 교통조사 및 분석
- ⑩ 기본계획 수립
- ⑪ 사업계획 및 실행방안
- ⑫ 타당성 검토 및 효과분석
- ⑬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자문회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⑭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2) 설계도면

-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위치도
  - 일반도(표준횡단면도 등)
  - 노선 종평면도, 주요 횡단면도
  - 주요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 구조상세도(표준도 등)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 ② 설명문의 기입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③ 표제란
  -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관련도면의 표기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 (3) 조감도

- ① 발주자가 요청한 구간에 대하여 개발계획 조감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규격은 A3(297×420mm)으로 하되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4) 기 타

- ①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모든 보고서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6장 성과품 납품

### 1. 성과품 납품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10부	
종합보고서 별책부록	10부	
설계도면(A3)	5부	
CD-ROM 1식	3식	
현장조사 사진첩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1.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